

행정자치부

훈계·주의 요구

제 목 이동식 화장실 구매 설치 수의계약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강원도 본청,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관 련 자 ① 정선군 ○○○○과 지방○○○○(전 지방○○○○○○) ○○○

② 고성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15. 1.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정선군 ○○○○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이동식 화장실 구매 업무를 처리하였고

지방○○○○○○○ ○○○은 2014. 9. 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고성군 ○○○○○과에서 실무담당자로서 이동식 화장실 구매 업무를 처리하였다.

내 용

강원도에서는 2015. 00. 00. “○○○○○○○○ 국민여가캠핑장 조성공사 이동식 화장실 구매” 계약(계약금액 175,500천원)을 주식회사 ○○○○(대표 ○○○○)과 수의계약 방법으로 체결하는 등 강원도, 원주시, 삼척시,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고성군, 양양군 등 9개 관서는 2013년부터 2016년 감사일 현재까지 (주)○○○○ 등 5개 업체와 이동식 화장실 구매·설치 계약(총 계약금액 2,903백만원)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28건의 계약을 직접 체결하거나 ○○지방조달청에 의뢰하여 체결되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사목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특허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 예를 들어 (주)○○○○은 결로방지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을 적용하는 일부기능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주)○○○○○○에서 생산되는 이동식 화장실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기능이 구비⁶³⁾되어 있는 등 이동식 화장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각각의 기능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위 관서들 내에서도 각기 다른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이동식 화장실을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다른 특허제품을 구매⁶⁴⁾하였고 심지어 동일 부서에서도 때에 따라 다른 특허제품을 대체·대용품이 없다는 사유로 구매하였다.

따라서 위 관서들에서는 이동식 화장실 구매·설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방서에 위 특허사항을 그대로 포함시키지 않고 비슷한 기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는 등 적절한 대체품이 있으므로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양(이동식 화장실에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결정한 후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정하여 일반경쟁 방식으로 구매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들에서는 위 특허제품에 대한 대체·대용품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위 특허를 보유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더구나 조달 구매하는 일부 계약 건의 경우에는 ○○지방조달청에서 “최근

63) 겨울철 동파방지 및 실내 환경오염 기능, 저비용 관리 및 에너지 절약하는 기능을 할 수 있는 특허제품으로 등록되어 있음

64) 각기 다른 부서에서 또는 동일 부서에서 다른 업체의 특허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은 각각의 특허제품 간에 대체·대용품이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음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특허·실용신안·디자인등록 제품에 대하여 동 품목의 제품 간에는 기능이나 성능 등이 유사하여 대체·대용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사 제품 등을 비교하여 적절한 대체·대용품의 유무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명백한 사유로 대체·대용품이 없어 특허 등의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는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만 수의계약을 추진해 달라”는 대체·대용품 재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형식적인 검토결과 대체·대용품이 없다고 회신하는 등 위 특허제품에 대한 대체·대용품 유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특정업체가 계약을 수주하게 되어 이동식 화장실 물품을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업체의 입찰참가 기회가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정선군수, 고성군수는**

[훈계]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삼척시장, 횡성군수, 영월군수, 평창군수, 정선군수, 고성군수, 양양군수는

[주의] 지방계약법령의 규정에 맞게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특정업체에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수의계약은 관계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시하시기 바랍니다.